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정기 12차	일자	2023.3.20 19:00	장소	총학생회실(107관 208호)
----	--------	----	-----------------	----	------------------

0 성원 점검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X	○	X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X	○	○	○	○	10/13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3/23(목)~4/12(수) 집행위원회 리크루팅 -3/28(화) 교수-학생 간담회 금일 18시까지 설문 진행 및 단위요구안 작성 예정 -다음 주 중 간호대 재학생 대상 마스크 배부 예정 -23학번 대상 새터 기념품 추후 배부 예정
경영경제대학	-3/21(화) 19시 단과대학 선거 룰미팅 진행 예정
사범대학	-집행국 신입국원 모집 완료 금일 첫 회의 진행 -새터 상품 배부 중 -2023 다이어리 각 학과 전달 완료 및 학과별 배부 중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단 선거 후보자 없어 무산 및 무산 공고 완료 -비대위 집행부 리크루팅 진행 중 -단과대학 회칙 및 세칙 개정을 위한 검토 진행 중 -단과대학 동아리 신규 모집 진행 중
약학대학	.
예술대학	-단과대학 마스크트 공모전 진행 중 -단학대회 일정 조율 중 -2023 다이어리 수령 희망 인원 조사 완료 및 각 전공 학생회 통해서 배부 진행 중
의과대학	.
인문대학	-2023 다이어리 단위별 배부 중 -23일(목) 합동 공청회 진행 예정 및 금일 공지글 게시 예정
자연과학대학	.
통일공대	-3/21(화)~3/22(수) 10시부터 19시까지 기계공학부, 화학신소재공학부 투표 진행 예정, 투표율 미달일 경우 23일 연장, 투표율 50% 넘은 날의 21시 개표 예정 -3/29(수) 단학대회 진행 예정 및 단운위 의결 진행 예정
동아리연합회	-3/16(목)~17(금) 중앙마루 버스킹 행사 진행 완료 -3/20(월)~3/24(금) 신입국원 모집 중

2 보고 안전

<p>중앙집행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행위원장단: 전학대회 자료집 내 보고안전 취합 완료 - 교육자치국: 교보문고 제휴 관련 카드뉴스 업로드 완료, 영어회화라운지 조이랜드 측과 21일 미팅 예정 - 연대사업국: 전략정책국과 3월 문화콘텐츠 기획 완료, 16일 310관 참슬기 식당 학내 노동자 간담회 진행 완료, 농활 마을 컨택 18곳 완료하였고 추가적으로 지속하여 컨택 예정 - 일상사업국: 학교 점퍼 공동구매 최종 취합 및 주문 완료, 정혈용품 사업 29days 물품 수령 후 비치함 설치 완료, 생활관 3, 4월 소리함 마련하여 진행 예정 - 전략정책국: 다국어 번역 TF팀 13~14일 면접, 선발 후 17일 OT 진행 완료, 중앙도서관 앞 흡연구역 만족도 실태조사 13~17일 온·오프라인 설문 진행 완료 및 결과 취합 중, 연대사업국과 3월 문화콘텐츠 기획 완료 - 회계사무국: 학교 점퍼 공동구매 전체 회계 내역 정리 완료, 학생회비 추가 납부 관련 안내 카드뉴스 준비 중
<p>산하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위원회: 메가박스 이수점 제휴를 위한 계약 완료, 축기단 세부 팀별 정기회의 지속적으로 진행 중, 3/20(월) 축기단 1차 총회의 진행 예정 - 인권복지위원회: 응급의약품 사업 재정비 후 정상 운영 중(의약품 재고 상시 확인), 재선거 진행하는 단위들에 한하여 인권질의서 발송 완료 및 예정 - 장애인권위원회: 장애학생 교육권 가이드라인 제작 후 교수진, 일반 학생 등을 대상으로 배포 예정, 재선거 진행하는 단위들에 한하여 인권질의서 발송 완료 및 예정 - 졸업준비위원회: 3/15(수)부로 졸업학년 대표자 특방 개설 완료 금주 내 대표자 회의 실시 예정, 학위복 상시 대여사업 재개를 위한 기획안 작성 완료 및 학생지원팀과의 협의 후 4월부터 시행할 예정
<p>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학생회장 3/17(금) 대학평의원회 회의 참석 완료

3 논의 안건

1. 2022-2학기 예산자치제 회계 감사 관련 논의

1) 뮤즈

(11차 중운위 논의 결과) 공연장 관계자임을 증명 가능한 추가 자료로 ‘문자 내용’ 제출하였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증명이 어려워, 추가 자료 요청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논의 결과 :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관계자임을 확인 완료 및 전액 지원 완료**

2) 미니언츠

(11차 중운위 논의 결과)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명함,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

-**논의 결과 : 추가 자료 확인 완료 및 잔액 10,435원 반환 재요청 예정**

이상 2022-2학기 예산자치제 회계 감사 관련 논의 종료

반환 금액 모두 받은 후에 잔액 보고 예정

2. 2023-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관련 논의

- 총학생회 관련 회칙, 세칙 및 규정 제정/개정 논의

기존 진행 예정 일자인 4/5(수)에서 장소 대관 불가로 인해 4/6(목) 2023-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예정

-수업 등의 일정으로 인해 중간 참석 예정이라면 대리인 참석 이후 교체 요청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개정 논의 사항-----

제73조

*이중 피동 해소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혀진 위원회의 대표이다.

> 중앙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비상대책위원들의 투표로 뽑힌 위원회의 대표이다.

제77조 2항

*띄어쓰기

총투표의 권한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의 모든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 된다.

> 총투표의 권한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의 모든 의사를 묻고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 방식이다. 앞에 정해진 모든 의결 방식이나 단체보다 우선시된다.

제79조 1항

*띄어쓰기

투표의 진행방식은 본 장에 정의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을 따른다. 또한 새롭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위의 제78조(투표관리 위원회)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 투표의 진행방식은 본 장에 정의되지 않을 경우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또한 새롭게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 방식이 나오면 위의 제78조(투표관리 위원회)에서 그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11차 중운위 회의 재논의 안건]

*제3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에 관한 내용은 권리에 대한 내용이므로 제4조로 이동

(원안)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개정안)

제3조(회원)

본회의 회원(이하 ‘회원’)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의 학사과정 재적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선출직 및 임명직에 대한 탄핵권을 가진다.
- ④ 회원은 본회의 회원에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제30조(임무 및 권한)

- ① 총·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를 대표한다.
- ②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 전학대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중앙감사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③ 총학생회장은 본회 및 회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
- ④ 총학생회장은 예산의 집행과 전학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각 집행국 국장, **집행국원**의 임명 및 파면을 할 수 있다.
- ⑤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⑥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의 유고 및 궐위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⑦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위임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⑧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을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및 파면할 수 있다.

> 4항과 8항에서 집행국원과 위원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기에 삭제하였으나, 총학생회장의 총학생회 구성원에 대한 임명권 및 파면권을 명시하고자 새로운 조항 추가 : ⑨ **총학생회장은 중앙집행위원회 국원과 산하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지닌다.**

제72조

* ‘중앙운영위원회 회칙’ 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주어 명시 필요

중앙운영위원회 회칙 제38조와 제39조(중앙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 **중앙비상대책위원회는 총학생회 회칙** 제38조와 제39조(중앙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결)와 같은 소집과 의결 절차를 거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 논의 사항-----

5조

사과대 제안:

총학생회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안 :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반 업무의 집행, 조정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최고 의결 기구이다.

(추가 논의 내용)

총 : 문장 내용의 변동이 없으며, 위상 관련 부분이라 각 단위의 회칙을 보존하고자 현행 유지 제안

통일공대 : 현행 세칙 원안에 모호함이 없기에 현행 유지 동의

동연 : 간결성 외의 의미에 있어서 변동 사항 존재하는지 질의

사과대 : 의미가 바뀌지 않기에 제안 드림

동연 : 지금까지 개정이 없었으며, 의미 변동이 없기에 현행 유지 동의

논의 결과 : 각 단위별 세칙 확인 후 차후 중운위에서 재논의 예정

7조 나항

사과대 제안:

총학생회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그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 총학생회 선거를 학우들의 관심 속에서 **후보와 정책 및 공약**이 효율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한다.

사과대 : 단어의 중복성 및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 해당 세칙 개정 제안

사범대 : 단어의 중복성으로 인해 가독성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해당 세칙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기에 원안 유지 요청

총 : 후보가 경선일 경우에, ‘그 후보’ 라는 표현이 적합하기에 원안 유지 제안

논의 결과 : 원안 유지

7조 다항

사과대 제안:

세칙과 중선관위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

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 세칙과 중선관위가 각 선거운동본부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등을 포함한 **가중 제재 조치**를 각 선거운동본부에 취할 수 있다. 또한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 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추가 논의 내용)

사과대 : 가중제재라는 말은, 복수의 선거시행세칙 위반을 하였을 때 경고 등의 징계가 누적된다는 의미와 차이
총 : 경고가 누적되었을 때 해당 단어를 적용할 수 있음

사과대 : 최초의 경고는 가중제재가 아니며, 해당 단어를 삭제해도 내용은 변동 없음

동연 : 경중에 따라 가중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미 유지 필요하므로 원안 유지 제안

사과대 : 제재 조치를 여러 번 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지님

총 : 경고 1회만 받고 선거가 끝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며, 한 번 받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번 경고를 받는 상황도 존재함. 그렇기에 회칙 해석에 있어 해당 단어는 크게 영향을 주는 단어는 아님.

논의 결과 : 원안 유지

9조 다항

사과대 제안:

의결을 요하는 시안에 대한 의결은 중앙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을 요하는 사안**은 중앙선관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무효표판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 논의 내용)

통일공대 : 총학생회칙이나 타 회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통일성이 중요

총 : 통일성을 추구하려면 해당 안건에 초점을 맞추고 타 회칙도 검토 필요.

논의 결과 : 각 단위별 세칙 확인 후 차후 중운위에서 재논의 예정

17조 다항

선본 구성원의 자격이 없거나 이미 다른 선본의 선본 구성원인 사람을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하거나, 선본 구성원이 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임의로 선본 구성원으로 신고한 경우 중선관위는 해당하는 사람의 선본 구성원 신고를 반려하고 해당 선본에 책임이 있는 경우 경중을 따져 징계할 수 있다. 단, 이중 등록자에 대해서는 양측 선본 모두에 책임을 물어 징계한다.

사과대에서 17조 다항에 대하여 문장 정리 요청하였으나 정리하지 않아도 해당 세칙에 있어 모호함이 없기에 원안 유지로 논의 완료

논의 결과 : 원안 유지

15조 가

***오탈자 징정**

선본장은 중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들**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 선본장은 중선관위와의 소통에 있어서 **선본을** 대표함과 동시에 후보를 대변한다.

25조

*제4장 선거에 대한 세칙이므로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일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나’ 항의 일정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마감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추가 논의 내용)

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중앙운영위원회 체제일 때 선거일을 결정하기에 해당 세칙에는 오류가 없음

논의 결과 : 원안 유지

*추가 개정이 필요한 회칙 및 세칙은 차후 중운위 통해 논의 예정 및 개정안 또한 차후 중운위 때 일괄 확인 예정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시행 세칙 관련 논의]

-기존에는 통과 안건으로서 회의 진행 순서를 의결한 후 진행하였으나, 세칙으로써 제정한 후에는 중운위에서 확인 후 이상 없을 시 보고로써 인정하고 바로 전학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의결 진행

[성평등문화혁신을 위한 학생회칙 관련 논의]

-의견 없음

[규정 관련 논의]

-총학생회칙 내 규정은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과 예산자치제 규정 2가지만 존재

[산하위원회 규정 관련 논의]

- 1) 총학생회장의 필요 또는 제안에 따른 신설이 아닌 학생들의 연서명을 통해 전학대회 안건으로써 상정되어 가결됨으로써 신설된 산하위원회 이므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의견으로만 신설되는 추가 설립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지난 22-2학기에 진행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권위원회 장학금 미지급 문제와 공간 미배정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남아있음
- 2) 총학생회 내 산하위원회 별 업무의 경중과 업무량의 우위를 따질 순 없겠지만 현재 인권복지위원회의 상대적 업무 과중과 복지에 편중된 사업들, 장애인권위원회의 장애·비장애 학생들에 한정된 사업 방향 등을 고려했을 때 인권 분야/ 복지 분야로 업무를 조정하여 기존 장애인권위원회 업무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학생인권 의제를 다루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통해 총학생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1)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5항 총학생회장은 기타 총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총학생회 회칙 제55조 1항 각 위원회는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 총학생회 각각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분담하여 해당 업무를 관장, 집행한다.

1), 2)에 의거하여 위원회 개편안 제안

제안 :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 및 개편을 위해 위원회 규정 개정 논의

장애인권위원회의 기존 업무를 포함하여 더 폭넓은 학생인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 > 인권 분야
인권복지위원회의 업무를 복지에 집중하여 집행 및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 > 복지 분야

사과대 : 장인위는 학생 연서명 및 학생 대표자 발의로 신설되었고, 장애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에 포함되면 표현 애매

총 :

1. 업무 확장에 대한 동의를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5항에 의거하여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으로 중운위에 요청
2. 1번이 동의를 받는다면 총학생회 회칙 제37조 8항에 의거하여 중운위의 업무 및 권한에 따라 규정의 제정 및 수정 가능(승인 가능의 느낌으로 이해됨)
3. 총학생회 산하위원회 운영 규정이므로 각 위원회에서 개편된 특성에 맞게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후, 중운위의 동의를 받고 총학생회 회칙 제54조 2항에 의거하여 전학대회에서 통과

사과대 : 검토 필요한 부분이 장인위의 업무를 확장하여 인권위원회로 만들겠다는 건데, 인권위원회에서 어떠한 인권 사업을 담당할 것인지와, 어떠한 부서 조정을 할 것인지 보여줘야 할 듯

총 : 기존 장인위의 사업과 인복위의 인권 사업 등을 모두 가져올 예정이며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권 사업을 진행할 예정, 총학생회 산하위원회 자체 내부 규정이지만 개편에 대한 중운위의 동의가 있어야 그에 맞는 운영 규정을 확립할 수 있다고 판단함. 운영 규정 확립 후 중운위의 승인을 받으면 전학대회 안건으로 가져가며, 전학대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함.

사과대 : 위원회 업무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나 자세한 운영 계획이 필요함.

인문대 : 금일 회의에서 개편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려운 것인지?

통일공대 : 규정을 개정하고자, 중운위의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인지?

총 : 개편을 위한 중운위 동의가 선행되어야 개편안에 맞게끔 운영 규정을 내부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함.

통일공대 : 중운위 회의에서 체제 개편을 위한 의결을 진행한다면, 체제 개편이 확정인 것인지?

제54조 2항에 의거하면, 중운위에서 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의미가 있는 것인지?

총 : 중운위랑 전학대회에 대한 회칙만 본다면 산하위원회 업무 조정에 대한 권한이 없기에 총학생회 회칙 제30조 5항에 의거하여 체제 개편을 제안 드렸고, 사전에 위원장들과 논의를 통해 개편 규정을 계획 해두긴 했으나 어느 정도 중운위의 동의가 있어야 개편된 위원회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사과대 : 이번 회의 때 체제 개편에 대한 동의를 하여도, 다음 주 회의 때 가져온 규정에 부결하면 금일 회의 때 체제 개편 동의에 가결한 것의 효력이 없어짐. 그러므로 규정 및 운영 계획을 논의한 후에 확정이 가능할 것임.

경경대 : 체제 개편에 대한 의결보다는 현재 대다수가 동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개편 이후 운영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총 : 전학대회나 중운위에 대한 회칙에서는 산하위원회 업무조정 권한이 없어 제가 먼저 제안드린 것임. 전학대회 이상 단위에서 통과되어야하므로, 전학대회 전 운영 규정 확정을 위해 중운위 내부에서 충분히 회의를 하여도 되는 것이라 생각함. 금일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안과 운영 방향을 준비하고, 차주 정기회의에서 재논의.

4 의결 안건

1.

제적단위	찬성	반대	기권	결과

5 기타 안건

1. 2023-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명단 취합 요청

-추후 공지방을 통해 명단 양식 공지 예정

2. 학생회비 배분 관련 논의

-1~3차 학생회비 배분 예정, 학생지원팀에 납부자 명단 요청한 상황이고 총학생회 차원의 추가 납부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배분할 예정.

-학생회비 배분 기준

전체	금액	단위별	배분별	금액	비고
			기본배정액	₩ 4,400	단위별 납부 인원 × 4,400
₩ 9,500		단과대	역비율 환산액	₩ 250	단위별 인원 역으로 환산하여 배정(적은 단위 금액 보장)
			추가 배정액	₩ 200	역비율시 소수 단위의 총액 역전현상 발생을 없애기 위해 하위 5개(납부 인원 순) 단과대 정비율 배정
			총학생회	₩ 3,520	중앙단위 80%
		동아리연합회	₩ 880	중앙단위 20%	
전학대회비	-	₩ 250	전체 납부인원 × 250		

특이사항이 없다면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기존대로 배분 예정

3. 기타 건의사항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5대 중앙운영위원회